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통약관요약)**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특별약관요약)**

•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해외여행중에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병원치료비와 국내병원에서 입원, 통원 및 통원처방 조제비용을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해외병원 치료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로 인한 치료비는 한 사고당/질병당 US\$1,000를 한도로 함)

치료를 받은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보상함

- **국내병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통원의 경우 병의원등에 따른 공제 후)의 40%한도

1)입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표준형:보상대상의료비의 80%해당액, 선택형:보상대상의료비의 90% 해당액),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해 일정율(10% 또는 20%)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상급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1일 평균 10만원 한도)

2)통원: 외래는 방문1회당 표준형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처방조제비는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공제 후 보상, 선택형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을 차감한 금액, 처방조제비는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한 금액 공제 후 보상.

• **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으로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또는 여행 기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치료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 해외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1만원)을 공제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휴대품손해:** 해외여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부담금(1만원)을 공제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 목적물 1개, 1조 또는 1쌍당 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별비용:**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 구원자교통비, 숙박비, 유해이송비, 기타 제압비를 보상합니다.

\* **항공기 납치:** 해외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씩 20일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위 실손의료비(상해 또는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 **위의 담보항목 중 보험증권에 가입금액이 기재된 담보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주요 사유 (보통약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위의 요약약관은 해외여행보험II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요약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또는 추가특별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모 집 질 서 안내**

☒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안내

-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고객센터) 센터  
전화 : 1566-5800 / 팩스 : 02-3785-0015 / 인터넷 : http://www.acegroup.com/kr-kr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